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내 무 위 원 회  
1994. 10. 17.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0월 6일

. 회부일자 : 1994년 10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 107 회 임시회

.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 10. 17.)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유 의 재 )

가. 제안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 하기위하여 권한위임조례를 일제 정비
  - 총 37개사무 (신설 19, 개정 6, 폐지 12)
- 신설되는 주요사무
  - 택시의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공급기준책정)
  - 준도시 지역의 개발계획 승인
  -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전문위원 우 병 수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와 시·군간에 있어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 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중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장 설치허가에 있어 종전의 “공원묘지” 조문과 4개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며,
- 공업과소관 사무중 특정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도시가스사용 시설에 관한 권한, 에너지관리에 관한 권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 . 농산과소관 사무중 양곡매매업의 신고조항과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영위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의 신설
- . 관광과소관 사무중 현행 관광지 입장료의 징수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이의 개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한 보고검사를 할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 교통행정과소관 사무중 택시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 지역계획과 소관의 사무중 7개항목은 삭제하고 일련번호의 교정과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등 4개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 . 치수과소관 사무중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처리 규정등 9개항에 대해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 . 민간위탁 사무중 대상실과 소관별 일련번호의 부여 및 사회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에 관한사무와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사업 사무와 중소기업과 소관의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추진사무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무를 신설코자하는 내용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즉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의 택시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상세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6인, 찬성 6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